

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9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 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14. 11. 17.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14. 12. 8.
4. 상 정 :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(2014. 12. 8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(2014. 12. 9)
 - 안건상정, 질의·답변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(2014. 12. 19)
 - 안건상정, 원안 발의·의결

II . 제안설명 (기획조정실장 류경기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재정투융자기금의 감채기금 예탁금 1,06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예탁금 472억원 조기 상환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증가함
-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이 1,058억 4,400만원 → 2,479억 9,000만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134% 증가함

<수입계획>

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계획(A)	1차변경(B)	2차변경(C)	3차변경(D)	증감(D-C)	구분	당초계획(A)	1차변경(B)	2차변경(C)	3차변경(D)	증감(D-C)
수입합계	679,360	676,840	676,840	827,206	148,366	지출합계	838,542	836,022	832,322	980,688	148,366
예수금	169,182	169,182	169,182	167,182	△2,000	예탁금	10,000	10,000	13,700	13,700	0
예탁금회수	338,021	338,021	338,021	494,921	156,900	예수금상환	701,008	701,008	701,008	701,008	0
예탁금이자수입	33,700	33,700	33,700	33,700	0	예수금이자상환	31,688	31,688	31,688	31,688	0
예치금이자수입	10,400	10,400	10,400	6,100	△4,300	예치금	105,844	103,324	99,624	247,990	148,366
예치금회수	147,605	135,085	135,085	135,085	0	일일운반비	2	2	2	2	0
융자금회수	14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0						
융자금이자수입	9,634	9,634	9,634	7,400	△2,234						

Ⅲ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엄지운)

- 동 안건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2항1)의 “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,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
-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용자를 목적으로 지난 1992년도에 설치한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항목인 예치금이 당초(1,058억 4,400만원)보다 1.3배 증가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
- 동 기금의 예치금이 변경된 것은 다른 기금이 일시 융통하였던 재원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상환되어 이를 수입항목에 반영하고, 지출항목에 반영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2항에 따라 의회를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
-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계획중 ① 감채기금 예탁금 1,060억원, ②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예탁금 472억원, ③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예탁금 37억원이 상환예정('14.12.28)됨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탁금 원금회수액은 1,569억원 증가 되었으나
 - 금리인하 등으로 수입계획중 예수금 △20억원, 예탁금 이자수입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△43억원, 융자금 이자수입 △22억 3,400만원이 감소되어 실제 수입계획 증가분은 1,483억 6,600만원인 바

- 이를 지출항목인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, 지출항목중 예치금은 직전보다도 1.48배, 1,483억 6,600만원(996억 2,400만원 →2,479억 9,000만원) 증가하게 되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I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VI. 계수조정소위원회 : 구성하지 않음

◇ 첨부 :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. 끝.

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년 11월 1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정투융자기금의 감채기금 예탁금 1,06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예탁금 472억원 조기 상환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증가함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이 105,844백만원 → 247,990백만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134% 증가함

<수입계획>

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계획(A)	1차변경(B)	2차변경(C)	3차변경(D)	증감(D-C)	구분	당초계획(A)	1차변경(B)	2차변경(C)	3차변경(D)	증감(D-C)
수입합계	848,542	846,022	846,022	994,388	148,366	지출합계	848,542	846,022	846,022	994,388	148,366
예수금	169,182	169,182	169,182	167,182	△2,000	예탁금	10,000	10,000	13,700	13,700	0
예탁금회수	338,021	338,021	338,021	494,921	156,900	예수금상환	701,008	701,008	701,008	701,008	0
예탁금이자수입	33,700	33,700	33,700	33,700	0	예수금이자상환	31,688	31,688	31,688	31,688	0
예치금이자수입	10,400	10,400	10,400	6,100	△4,300	예치금	105,844	103,324	99,624	247,990	148,366
예치금회수	147,605	135,085	135,085	135,085	0	일반운영비	2	2	2	2	0
융자금회수	14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0						
융자금이자수입	9,634	9,634	9,634	7,400	△2,234						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